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358호 2013. 1. 28 (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3-5호 하동군 계약 특수조건 고시 ····· 2
○ 하동군 고시 제2013-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4차) ····· 2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51호 하동군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공고 ····· 25
○ 하동군 공고 제2013-52호 하동군 신조공인 공고 ····· 26
○ 하동군 공고 제2013-54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27
○ 하동군 공고 제2013-56호 2013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신청요령 공고 ····· 28
○ 하동군 공고 제2013-57호 하동군 도로명 변경(안) 공고 ····· 30
○ 하동군 공고 제2013-59호 하동군 신조공인 폐기공인 공고 ····· 31
○ 하동군 공고 제2013-67호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2
○ 하동군 공고 제2013-69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7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 2013-5호

하동군 계약 특수조건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하동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 하동군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붙임 1. 하동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2. 하동군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1부. 끝.

2013년 1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목 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하동군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란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도 포함하며, 설계서, 시공 등 기술적인 사항과 공사 현장을 알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사업부서의 소관업무로 한다.

3. 채권양도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4. 수입인지 및 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의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다. 적용대상 공사

이 규정은「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하동군이 발주하는 공사(공사·용역 3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사업주의 책무

1)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1)"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자 근로내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사업주는 "4)"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대가지급 사실 통보

사업주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장비 임대료와 관련한 대가의 직접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임금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체불 해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권채무 관계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장비의 임대료를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자료 등 협조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아. 임금지급실태 평가 및 공개

발주처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 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가항 및 나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나"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나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가"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산업안전보건법령」또는「건설기술관리법령」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거나 정산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정한 다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 조치한다.

10. 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에는(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

11. 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 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2. 하자보수 책임승계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공사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 및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의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가.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으로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및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및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나"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 관련 법규의 준수

가. 이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지방차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등),「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특수조건과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따른다.

나.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2013년 1월 3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하동군이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동군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근로내역서

☐ 사업(공사)명 :

☐ 근로자 근로내역

성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근로기간 및 일수	임금(원)	비고
			~ (○일간)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사업(공사)명 :

☐ 건설기계명 :

☐ 사용내역

성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사용기간 및 일수	금액(원)	비고
			~ (○일간)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근 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수급인 또는 하도급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 및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신청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날인

첨부서류 1. 근로자 임금 직불 합의 및 신청 사유서(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근 로 자 : 성명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건설기계 임 대 차 계약사항	근 로 장 소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임대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신청서

건설기계사업자			임대료(원)	입금계좌		휴대 전화번호	날인
상호	대표자	건설기계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건설기계임대료 직불 합의 및 신청사유서(수급인, 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건설기계사업자 : 상호 대표자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행정기관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군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계약 및 시공과 준공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군간에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그리고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군에서는 위의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하동군 재무과장 (인)

계약담당 (인)

담 당 자 (인)

계약상대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고 객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하동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1. 근거 및 목적

이 특수조건은「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적용대상 용역

이 특수조건은「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하동군이 발주하는 용역(공사·용역 : 3천만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사업주의 책무

가.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가"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관급용역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자 근로내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 사용내역서를 용역감독자 확인을 거쳐 용역감독자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마. 사업주는 "라"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대가지급 사실 통보

사업주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대가 수령사실 게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대가 수령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7. 대가의 직접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 임대료와 관련한 대가의 직접 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용역현장에 종사하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임금 또는 장비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체불 해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권채무 관계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의 임대료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의 임대료를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료 등 협조

계약담당자 또는 용역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9. 임금지급실태 평가 및 공개

발주처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0. 관련 법규의 준수

이 특수조건과 계약관련 법규가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따른다.

부 칙

이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은 2013년 1월 3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하동군이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동군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근로내역서

☐ 사업(용역)명 :

☐ 근로자 근로내역

성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근로기간 및 일수	임금(원)	비고
			~ (○일간)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비 사용내역서

☐ 사업(용역)명 :

☐ 장 비 명 :

☐ 사용내역

성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사용기간 및 일수	금액(원)	비고
			~ (○일간)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비사용 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용역감독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근 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수급인 또는 하도급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 및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신청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날인

첨부서류 1. 근로자 임금 직불 합의 및 신청 사유서(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2013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근 로 자 : 성명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용역감독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장 비 임 대 차 계약사항	작 업 장 소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임대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장비업자에 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에 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장비 임대료 직접지급 신청서

장비업자			임대료(원)	입금계좌		휴대 전화번호	날인
상호	대표자	건설기계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장비 임대료 직불 합의 및 신청사유서(수급인, 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장비업체 : 상호 대표자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고시 제2013 -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4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 2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94-3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94-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목압길 19-1	20070618	진감선사가 절터를 잡기 위해 나무오리를 날렸다 해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15		20070618	중동리와 서동리의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11		20070618	중동리와 서동리의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 210		20070618	주교천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로서 시설명에서 도로명부여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42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2-4	20070618	진교의 연원(淵源) 을 적용하여 민다리길로 명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41-2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8-18	20070618	연꽃을 상징하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3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52	2007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산49-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구고속도로 202	20070702	기존 하동군 구고속도로와 사천시 후포로를 합쳐 구고속도로 부여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산140-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398-9	20090302	매자와 신방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자연마을이름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80-1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110	20090710	19번국도의일부로서,섬진강을따라형성된 도로로 지역명 반영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66-12		20090710	19번국도의일부로서,섬진강을따라형성된 도로로 지역명 반영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173-178		20111019		폐지

하동군 공고 제2013 -51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3. 1. 17

2. 신조개각사유 : 체육시설사업소 신설

3. 신조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체육시설 시업소분임경리 관인	한글전서체 1.8㎝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체육시설 시업소일상경비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 정사각형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3. 1. 21(공고 후)

2013년 1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3 -52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공인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3. 1. 17
2. 신조개각사유 : 특별회계 기금명칭 변경
3. 신조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기 금출납명령권인	한글전서체 1.8㎝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기 금출납명령권인	한글전서체 1.8㎝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기 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기 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 정사각형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3. 1. 17(공고 후)

2013년 1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3 - 54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하 동 군 수 ㊞

명단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일반명단	라벨용명단	플로피디스크	CD(광학식디스크)
매당/80원	매당/250원	2,000원	3,000원

하동군 공고 제2013-56호

2013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에 의거 2013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지정기일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3 일

하 동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3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목적
-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지원규모 : **7,088백만원 (융자 5,670, 자담 1,418백만원)**
○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담 20%

※ 총사업비 지원한도 : 신설 8,000백만원, 증설·개보수 5,000백만원

□ 지원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 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대출신청자료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 제출서류
- 양식업 관련 면허증(허가증, 신고증) 사본 1부.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1. 23~2013. 2. 7 (15일간)**

○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사무소, 경제수산과

○ 신청안내기관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산업경제담당
- 사업담당부서 : 경제수산과(055-880-2453)

□ 기타 유의사항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며,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금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파이프 등 5년

하동군 공고 제2013 - 57호

하동군 도로명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사업에 의해 부여된 도로명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8.

하 동 군 수

1. 기　　간 : 2013. 1. 28. ~ 2. 17.
2.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안) 1건

일련번호	구분	도로명(도로명코드)	도로구분	관할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길이(m)	폭(m)				
1	현재도로명	큰땀길	길	하동읍	하동읍 화심리 303-5	하동읍 화심리 367	별첨 도면	506	5	20	1→52	큰땀이라는 옛 지명보다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하여 주소 찾기를 쉽게 하기 위함	도로명 변경 신청
	예비도로명	화심안길											

4. 의견 제출 방법 :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2. 17 일까지 하동군(민원과, 전화 055-880-2083, 팩스 055-880-2078, E-mail renew1020@korea.kr)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하동군 공고 제2013 -59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공인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3. 1. 21

2. 신조개각사유 : 조직개편(과 명칭 변경)

3. 신조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건설교통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건설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건설교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건설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3. 1. 21(공고 후)

2013년 1월 2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3 - 67호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안 제2조)
   다.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라.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마.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해촉 (안 제5조)
   바.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안 제6조)
   사.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7조)
   아.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안 제8조)
   자.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안 제9조)
   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카.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안 제11조)
   타. 운영세칙 (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12일 까지 하동군(참조 : 민원과, 전화 055)880-2093, FAX 055)880-2078, e-mail yyj71@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3 - 69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안 제2조)
   다.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라.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마.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해촉 (안 제5조)
   바.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제척 및 기피 (안 제6조)
   사.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 (안 제7조)
   아.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간사 (안 제8조)
   자.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안 제9조)

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카.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1조)
타.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안 제12조)
파. 운영세칙 (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12일 까지 하동군(참조 : 민원과, 전화 055)880-2093, FAX 055)880-2078, e-mail : yyj71@korea.kr)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동군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